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서 보 영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서보영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,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며,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
-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마련해 두었으며,

-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
-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【서보영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3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3.
발의자 : 서보영, 장호섭, 남현주, 이선주,
황국주, 박왕규, 박종길

1. 제안이유

가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 (안 제4조)
- 다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(안 제6조)
- 마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 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1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호관찰 대상자 등”(이하 “대상자 등”이라 한다)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
2.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
3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,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(受講) 및 생생보호(更生保護)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“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간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“간생보호 대상자”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간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